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의안 번호	385

제안연월일 : 2021년 12월 3일
제 안 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요 골자로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자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을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직무에 대한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나. 대리자의 책임 명시(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제정 규칙안 별첨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3. 주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